





수 신 조합원 제위  
참 조  
제 목 2016년도 신용평가 업무안내

---

1. 귀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우리 조합의 금년도 신용평가 신청요령 등을 수록한 『2016년도 신용평가 업무안내』와 재무제표 전송을 위한 **세무대리인 안내문**(동 안내문은 조합원이 세무대리인에게 직접 전송)을 ‘붙임’과 같이 보내드리오니, 이를 참고하시어 신용평가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2016년도 정기신용평가 기간은 2016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로 우리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 **인터넷창구**를 통해 신청하실 수 있으며, 온라인신청이 불가능한 조합원께서는 신용평가신청서에 의한 서면신청이 가능합니다. 기존 신용등급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신청을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신청서식 : 조합 홈페이지 고객광장 - 업무자료 - 업무서식에서 다운로드

4. 아울러, 신용평가와 관련된 자세한 사항은 조합 홈페이지를, 문의사항은 ‘붙임’의 각 지점 연락처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붙 임 : 1. 세무대리인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 1부.  
2. 『2016년도 신용평가 업무안내』 1부.

건 설 공 제 조 합 이 사 장

직 인  
생 략



## 세무대리인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문

수 신 : 세무대리인 제위

발 신 : 건설공제조합

제 목 : 세무대리인 재무제표 전송방법 안내

1. 매년 저희 조합원의 신용평가에 협조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2. 2015년 결산재무제표(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계산서)를 아래 재무제표 자료 전송방법을 참고하시어 전송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바쁘신 와중에 조합원의 재무제표 전송에 협조하여 주신 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더 자세한 사항은 NICE평가정보(1566-2544,02-3771-1100) 또는 건설공제조합 신용평가팀(02-3449-8738)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재무제표 자료 전송방법

※ 재무제표전송과 관련하여 수수료는 절대 발생하지 않습니다.

회계프로그램	전송방법
<p><b>더존 iPLUS</b></p> <p><b>더존 Smart A</b></p> <p>세무명인</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더존 iPLUS</b> : 메인화면에서 직접 전송                ✓ [경영정보/금융지원] ⇒ [금융자료전송] ⇒ [재무제표/부가세전송]</li> <li>○ <b>더존 Smart A</b> : 메인화면에서 직접 전송                ✓ [자동전표] ⇒ [금융자료전송/일정관리] ⇒ [재무제표부가세전송]</li> <li>○ 세무명인 : 메인화면에서 직접 전송                ✓ [재무회계] ⇒ [nice평가정보] ⇒ [기간 및 제출자료 체크]</li> </ul> <p>※ 전송기관은 <b>건설공제조합</b>(기관코드: 403)이고, 전송업체 담당자 정보(성명, 핸드폰, Email)는 임의 입력하시면 됩니다.</p> <p>※ 자체 기장의 경우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직접 전송은 불가하오니, 관할 지점으로 세무조정계산서를 서면제출 하시기 바랍니다.</p>
<p>세무사랑2, SMS회계, Neo1, Neo2 등</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타 회계프로그램 : <b>원클릭시스템</b>을 통해 전송</li> <li>1. <b>전송용 파일생성</b>                ✓ 회계프로그램에서 2015년도 결산재무제표를 <b>엑셀용파일 또는 전자신고파일(*.01, *.02, *.100, *.A100, *.801, *.enc)</b>로 저장</li> <li>2. <b>원클릭시스템 실행</b> : <a href="http://www.bigservice.co.kr">www.bigservice.co.kr</a> 에서 다운로드                ✓ [로그인] ⇒ [업체기본정보입력] ⇒ [제출기관(건설공제조합), 제출서류 선택] ⇒ [제무재표(2015년 결산재무제표) 선택] 전송</li> </ul> <p>※ 전송용 파일을 첨부파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p>





# 2016년도 조합원 신용평가가 안내





# 순 서

제1절 신용평가 개요 .....	1
제2절 신용평가 절차 .....	2
제3절 신용평가 방법 .....	4
제4절 신용평가 사후관리 .....	5
제5절 신용평가관련 Q & A .....	9
1. 신용등급 일반 .....	9
2. 신용평가 절차 개요 .....	12
3. 신용평가서 및 조합원 실태현황 작성방법 .....	14
4.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방법 .....	17



## 1. 신용평가 목적

- 건설산업기본법 및 정관에 의거 조합원의 재무 및 비재무 상황 등 신용상태를 종합적으로 평가하여 신용등급을 결정하고 신용등급에 따라 **조합과 업무거래토록 하는 제도**입니다
- 신용등급에 따라 업무거래를 차등화하는 신용위험관리를 통해 조합 재무건전성을 높이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 2. 신용평가의 주요관점

- 조합 업무거래로 발생하는 보증 및 용자로 인한 부실채권을 최소화하고 신용상태가 양호한 업체를 우대하고자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하는 데 주안점**을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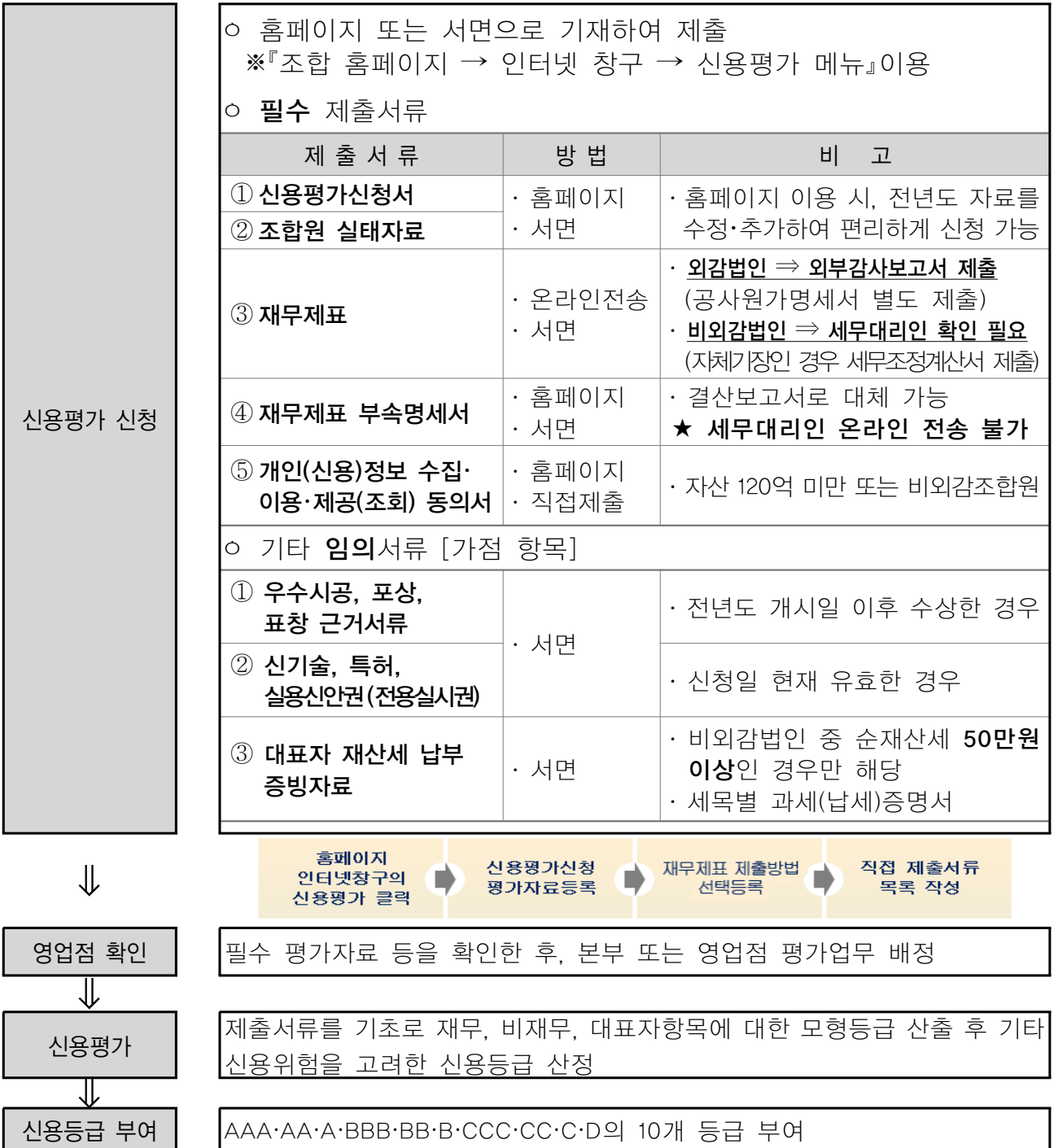
## 3. 신용평가의 용도

- 건설업 등록기준 보증가능금액 확인서 발급에 필요한 출자좌수 기준
- 보증한도 및 보증수수료 할인·할증률 적용 기준
- 용자금 이자율 적용기준
- 기타 보증심사 등에 활용

## 제2절

# 신용평가 절차

### 1. 신용평가 절차





## 2. 신용평가 실시시기 및 유효기간

- 매년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기신용평가 실시
- 신용평가지 적용한 조합원의 최근 결산일로부터 1년 6월까지 유효
  - ※ 결산일이 2015. 12. 31인 경우 2017. 6. 30까지 유효

## 3. 신용평가 제외대상

- 최근 결산일 기준 2개 사업연도의 결산재무제표가 없는 경우
  - ※ 분할된 법인이거나, 조합가입 2년 미만인 신규조합원의 경우에도 종전에 다른사업을 영위하여 2개 사업년도 재무제표를 제출할 수 있는 경우에는 신용평가를 받을 수 있음
- 최근 결산일 기준 매출액이 없는 경우
- 외부감사보고서의 감사의견이 “의견거절” 인 경우
- 재무제표의 분식 또는 신용평가 자료의 허위제출
- 실질적으로 채무불이행(부도) 상태인 경우
  - ※ 신용불량정보관리기준 N3 분류, 금융결제원 당좌거래정지 처분, 회생절차 신청, 조합용자금 연체일수가 90일이상 경과, 보증대급금 발생  
(N3 또는 회생신청 조합원 중 조합으로부터 업무거래가 잠정허용된 경우는 제외함)

### 제3절

## 신용평가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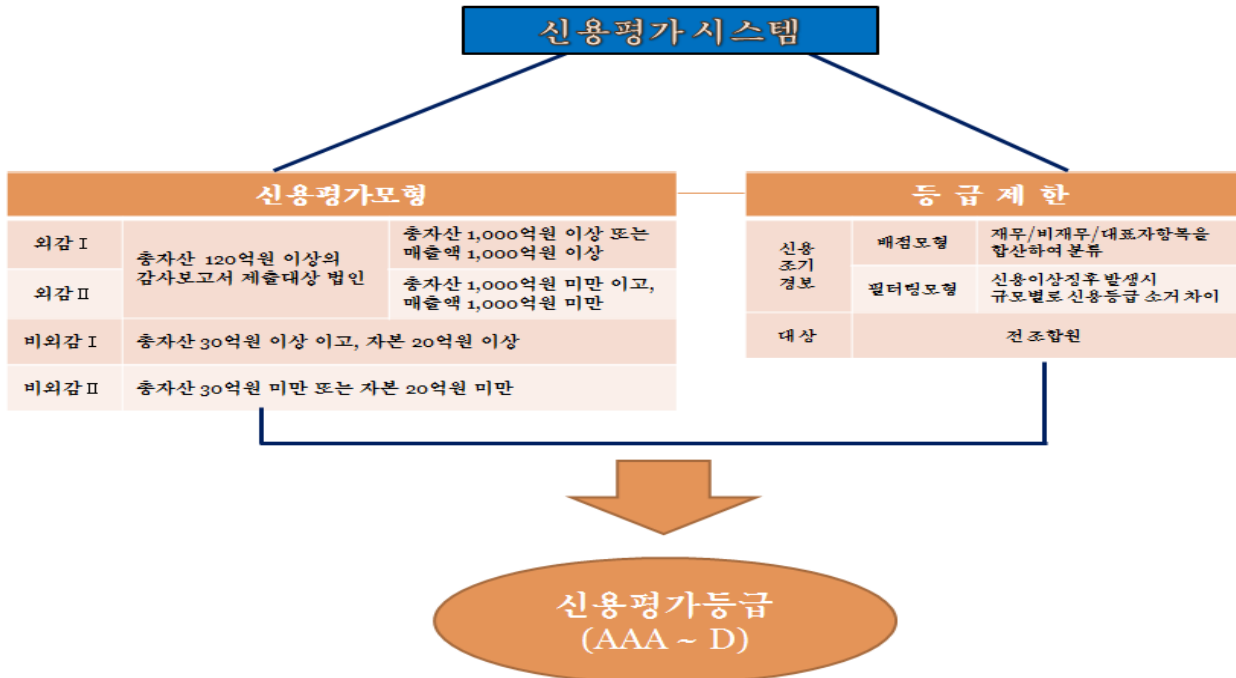
### 1. 신용평가 방법

- 최근 사업연도의 결산 재무제표, 사전에 수집된 비재무정보\*를 신용평가시스템에 적용하여 객관적인 방법으로 조합원의 채무상환능력을 평가합니다.

\* 신용불량정보, 대표자신용도, 금융기관여신정보, 행정처분, 수주실적 등

### 2. 신용평가 시스템

- 조합의 신용평가시스템은 국내외 금융기관에서 구축·활용하여 유의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통계모델링기법을 활용하여 신용평가 전문기관과의 공동연구(2015. 05. ~ 2015. 11.)를 통해 구축 되었습니다.



- 평가시점 이후 장래 불확실한 환경변화에 따른 재무(사업)안정성의 변화 가능성이 주요하게 반영됩니다.

## 제4절

# 신용평가 사후관리

### 1. 신용조기경보

- 신용평가 이후 부실징후 발생시 신용등급을 조정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 신용등급 효력상실 및 재평가
  - 신용조기경보 분류 : 정상 ⇨ 경보1 ⇨ 경보2 ⇨ 경보3 ⇨ 경보4
  - 부실징후 발생시 신용조기경보를 재분류하며 “정상에서 경보단계로 변동시” 및 “경보단계 내에서 하향변동시” 기존 신용등급 효력이 상실되며, 재평가시 신용등급이 하락합니다.  
(단, 신용등급이 재분류된 조기경보단계의 제한등급 이하일 경우 제외)
  - 신용이상징후는 매 영업일 마다 전산으로 실시간 반영됩니다.
- 신용조기경보 항목

구 분	신 용 이 상 징 후
금융 정보	· 여신금액(대출건수) 증가 · 2금융권 여신금액(대출건수) 증가 · 어음할인금액(건수) 증가 · 금융권 여신한도 소진 · 채무보증(인수) 증가 · 지급보증 증가
연체 정보	· 채무불이행 또는 연체이력 (금융권·공공기관·조합)
조합 정보	· 보증사고 발생(보증금 청구) · 하자발생접수 · 업무거래정지 · 출자증권 (가)압류
시장 정보	· 분·반기 재무상태 악화 · 기타부실사유 · 외부신용도 하락
대표자 등	· 대표자 신용도 하락
기 타	·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정당제재) · 재산권 침해

※ 신용등급 효력상실 신용이상징후 (예시)

- 금융정보, 조합정보의 경우 상기 예시 비율(일수) 미만일지라도 중첩적으로 발생시 등급효력이 상실될 수 있습니다.

구 분	신 용 이 상 징 후 ( 예 시 )
금융 정보	· 정기평가 이후 법인여신금액이 증가 추세에 있는 경우
	· 전체 여신금액 중 2금융권 비중이 20% 이상인 경우
	· 타법인 채무보증금액이 자본총계 대비 400~800% 이상인 경우
	· 금융권 여신금액 한도 소진율이 55~85%이상인 경우
	· 최근 2금융권 대출건수가 4~5건 이상인 경우
불량 정보	· 법인, 대표이사 또는 관계회사 신용불량정보 (연체정보) 수신
행정 처분	· 4월이상 영업정지처분을 받은 경우
	· 발주자가 부정당하다고 인정하여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한 경우
조합 정보	· 보증금청구 접수 후 15~30일 이상 계류 중인 경우
	· 조합 주채무(융자금, 이자, 보증대급금) 연체 발생
	· 조세채권 또는 조세외채권에 의한 (가)압류 발생한 경우
	· 의무불이행으로 조합 업무정지기간이 15~30일 이상 발생
시장 정보	· 분·반기 재무제표 공시결과 재무안정성 급격히 저하
	· 외부신용등급(회사채)이 하락한 경우
	· 워크아웃 또는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체결한 경우

주) 총자산, 자본, 매출액 규모에 따라 차등 적용

## 2. 신용관리에 필요한 유의사항

### □ 금융거래

- 매출 및 영업이익(현금흐름)수준을 고려한 **적정한 차입금 규모** 유지
- **일시적인 차입금의 급격한 증가**는 신용이상징후로서 작용
- 자본안정성을 위협하는 **채무보증(지급보증)**은 신중히 고려
- **금융비용 부담 수준** 고려 (1금융권 vs 2금융권)
- 은행권 **미사용여신 한도** 관리

### □ 내부관리 시스템

- 각종 비용(수수료)에 대한 **철저한 기일관리**로 연체 등 사전 방지
- **행정처분**(영업정지, 부정당업자 제재)에 대한 주의

### □ 조합거래

- 공사와 관련한 **분쟁이건** 등을 사전에 방지
- 공사완공 후 **하자보수의 적극적인 이행** (하자발생 분쟁 등 대비)
- 조합 업무와 관련한 **협조 사항** 이행 (서류 미제출, 변경처리 지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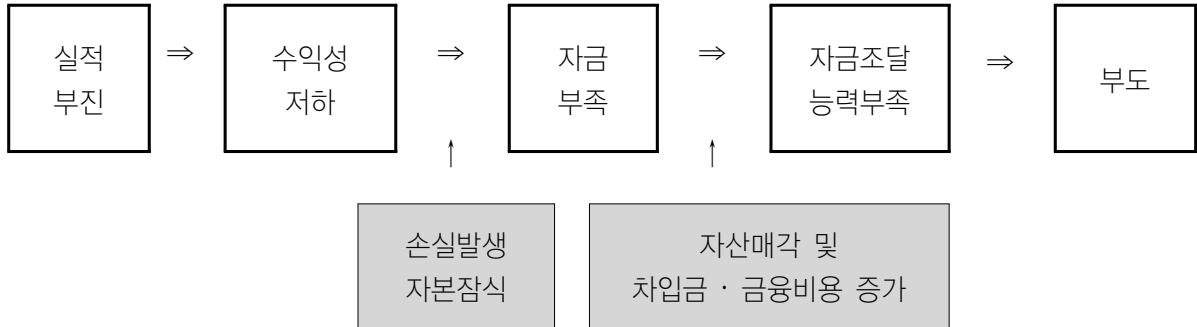
### □ 영업활동

- **수주실적(매출) 및 수익성의 안정적인 유지**가 필요
- 분양사업, 해외사업, 민간개발 사업 등 진행시 **사업(재무)위험** 고려
- **경쟁력 확보** (영업경쟁력, 기술경쟁력 등)



### 3. 주요 부실화 사례

□ 기업의 부실화 과정



□ 부실화 사례 (예시)

구분	주요 사례
실적부진	· 적정 수주물량이 확보되고 있지 않거나, 대부분 장기계속공사로서 단기간 내 수익으로 인식할 공사물량이 부족한 경우
수익성저하	· 공사수익으로 차입금(부채)상환을 계획하나, 예상과 달리 원가상승 등 <b>채산성 악화로 자금부담 가중</b>
자금부족	· 유동자산 중 장기간 회수 지연된 공사미수금 또는 대여금으로 <b>운전자금 부족</b> 등 자금회전 곤란
	· 영업활동으로 인한 수익발생에 불구, 사업목적과 관련 없는 관계사 등에 채무보증, 자금대여로 <b>실질적 채무부담, 자금유출 증가</b>
자금조달 능력부족	· PF사업 또는 분양(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관련 사업성과의 부진으로 인하여 미착공(미분양) 재고자산, 시행사 자금대여 등으로 <b>자금유출(채무부담) 증가</b>
	· 금융기관 등의 여신한도가 소진되거나, 신인도가 미흡하여 추가적인 여신이 이루어지지 않는 등 <b>외부 자금조달능력 저하</b>
	· 자산 및 매출규모 대비 차입금(부채)규모가 과도한 수준인 상태에서 대내외 환경악화로 인한 자금유입 제한으로 <b>채무상환부담 가중</b>

## 제5절

# 신용평가 관련 Q & A

## 신용등급 일반

### 1 건설공제조합 신용등급이 타 신용평가기관과 차이가 나는 이유 ?

- 신용평가는 **사용목적에 따라 신용등급 체계를 비롯하여 평가기준이 서로 상이하기** 때문에 조합 신용등급과 **직접적인 비교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 참고로, 우리 **조합은 신용등급에 따라 (보증 등) 채무 부담이 정해지므로 조합 재무 건전성에 기여할 목적(장·단기 부도예측 중시)으로 보수적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 평가방법에서 조합은 회사의 차입금 등 부채규모, 현금 유동성 등 채무 상환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나 외부평가기관은 상대적으로 매출액 증가율 등 성장성 및 수익성 등 상거래 이행능력에 가중치를 부여하므로 조합보다 **관대한 평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참고로, 회사채 및 기업어음의 상환능력 평가등급은 공공입찰용 신용평가 및 조합 신용등급 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 2 신용평가방법 변경에 따라 조합원의 재무상태 변경없이 신용등급이 하락할 수 있는 지 ?

- 신용평가는 차주(조합원)의 부도가능성(부도확률)에 따라 등급을 구분하여 각종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율 결정 등)에 활용함으로써 조합의 재무건전성 및 안정성을 유지하여 조합원의 소중한 재산을 지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 따라서, 조합원의 부도확률에 따른 적절한 등급을 부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므로 매년 신용평가방법의 부도변별력 및 안정성을 검증하고 있으며, 기업 및 경제환경 변화 등에 따라 기존 모형의 변별력이 떨어지게 될 경우 모형의 변경(약 4 ~ 5년 주기)도 필요합니다.
- 이에 따라 일부 조합원의 경우 **매년 대내외 경기변화 등을 반영한 평가지표 기준값 변경에 따라** 신용등급 하락이 발생할 수 있는 바, 모형 개선시 수많은 시뮬레이션을 통해 등급변동을 최소화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 3 전년도 대비 매출이 크게 증가하였는데 등급이 동일한 이유 ?

- 조합 신용평가방법은 해외선진금융기관에서 이미 구축하여 그 통계적 유의성 및 신뢰성이 검증된 선진평가기법이 적용된 방법입니다.
- 평가기준은 수익성, 차입금 규모, 유동성 등의 재무항목과 시공능력, 여신금액 등 기업신용도에 영향을 주는 비재무항목 및 대표자신용도가 결합되어 있는 바,
- 단순히 매출증가만을 이유로 등급이 상향되지 않으며, 공사원가, 채산성 등 **수익성** 여부, 차입금의 규모 및 유동성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실질 채무상환능력의 변동이 있는지 여부를 최종 평가합니다.

### 4 정기평가 등급이 만족스럽지 않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는지 ?

- 현재 외부감사법인 중 결산시점 이후 **외부감사인에 의한 분·반기 검토를 받은 조합원에 한하여** 긍정적 변동(재무개선)이 발생하는 경우 재평가 대상이 됩니다.
- 이는 분·반기 공시가 의무적인 일부 상장사를 제외하고는 정기평가 이후 결산시점이 아닌 상태에서 재무제표 작성이 어려운 상황인 점과,
- 아울러 비외감 조합원의 경우, 국세청 신고 재무제표가 아닌 자료를 재평가에 반영할 경우 자료의 형평성 및 신뢰성 저하가 우려됨에 따라 재평가 대상에서 제한됩니다.

- 우리조합의 신용평가제도는 조합원의 재무상황과 비재무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반영하여 신용도를 평가하고, 결정된 신용등급에 의하여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는 제도입니다.  
즉, 우리조합과의 업무거래(보증한도 및 수수료 결정 등)를 위하여 **조합 내부적으로만 활용**되는 것입니다.
- 다만, 민간공사 입찰참가시 발주자가 조합 신용등급을 요구하는 경우가 있으며, 이 경우 신용등급확인(원)을 조합 인터넷창구[제증명발급-신용등급확인원] 또는 영업점에서 발급받아 제출하시면 됩니다.  
(발주자 직접 요청시에는 조합 내부규정에 따라 조합원의 신용등급 제공 불가)
- 아울러, 우리조합 신용평가에 사용하는 평가모형은 신용평가전문기관의 연구용역을 통하여 마련된 건설업 특성에 맞는 신용평가 모형으로써, 객관성 및 공정성을 유지하고 기업신용도(신용위험)를 적기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신용평가 절차 개요

### 1 신용평가의 대상과 시기, 제출서류는 무엇인가요?

- 우리조합 신용평가의 대상은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고자 하는 모든 조합원이며, **신용평가는 매년 4월부터 6월 사이에 정기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이 기간 중에 신용평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수시로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제출서류(p.2)는 신용평가신청서, 조합원 실태자료, 재무제표, 기타 평가서류가 있습니다. 다만, 12월말 결산법인이 아닌 경우 아래와 같이 결산일로부터 3개월 경과 후 신용평가신청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업연도가 변경된 경우 관할 지점에 문의 바랍니다.)

결산일	2015.12.31.	2015.03.31.	2015.06.30.	2015.09.30.
신용평가 신청	2016. 4~6월	2016. 7~9월	2016. 10~12월	2017. 1~3월

### 2 신용평가는 반드시 받아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반드시 신청하여야 하는 **의무사항은 아닙니다.** 신용평가를 신청하지 않는 경우에는 최하위등급(D등급)으로 조합과 업무거래를 하실 수 있습니다.
- 참고로 조합은 신용평가 결과에 따라 건설업 등록을 위한 출자좌수 및 보증·용자의 이용한도(수수료)를 차등하여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동 사항을 고려하여 신청 여부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 3 신용등급에 따라 차등되는 내용은 무엇이 있나요?

- 보증수수료 및 보증한도
- 융자금이자율 및 1좌당 융자한도
- 보증서 발급시 제출서류
- 업무거래정지 범위 등



4

#### 신용평가는 언제까지 신청해야 하나요? 4월까지 신청해야 하는지?

- 집중된 기간 내에 다수의 조합원이 신청하게 됨에 따라 인력 및 시간 등의 이유로 신속한 업무처리가 어려울 수 있습니다.
- 2015년도에 부여된 신용평가등급의 유효기간(12월 결산법인의 경우 **2016.06.30**)을 확인하시고 신용등급 유효기간이 지나지 않도록 **충분한 시간을 두고 접수를 완료하여야** 합니다.

6

#### 재무제표 부속명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하나요?

- 신용평가는 결산재무제표의 전산입력 과정이 필수적이고 평가지표의 정확한 산출을 위하여 계정별 명세에 따라 세부적인 분류 등이 필요함에 따라 필수 제출서류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 다만, 서식 작성이 곤란할 경우 세무대리인이 확인한 「결산보고서」 또는 「세무조정 계산서」 책자 제출로 대체하실 수 있습니다.
- 재무제표의 전송은 회계프로그램을 통해서 가능한 반면, **부속명세서는 회계프로그램을 통한 전송이 불가하며 조합 인터넷창구 신용평가 메뉴에서 직접 입력 또는 서면으로 제출하여야** 합니다.



## 신용평가서 및 조합원 실태현황 작성방법

1

### 신용평가 신청서의 경리회계담당자 및 결산(세무)대리인은 누구를 기재하나요?

- 경리회계담당자는 회사(조합원) 담당 직원을, 결산(세무)대리인은 세무사 사무실 등의 담당자를 적어주시면 됩니다.

2


### 건설업종 보유현황은 어떻게 작성하는지요?

- 현재 보유하고 있는 종합공사업 및 전문공사업, 주택건설사업, 기타 건설관련업 등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공사업과 전문공사업 외의 업종은 지난 신용평가 신청이후 변경사항이 있을 경우 관련 등록증(신고증)사본을 별도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 정보통신공사업, 소방시설공사업, 환경관련공사업, 문화재수리공사업 등은 신용평가와 관련이 없으므로 기재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3

### 대표자 개인 재산현황을 모두 등록하여야 하나요?

- 대표자 개인 재산현황은 **비외감법인** 대표자 개인이 재산세(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을 제외한 순재산세)를 **50만원이상** 납부하였을 경우에만 작성하시면 됩니다.
- 임의 제출서류이며, 제출시 비재무평가에 가점으로 적용됩니다.



#### 4 경영실권자란 무엇인가요?

- 경영실권자란 법인세법시행령 제87조에 의한 특수관계인 중 지배주주에 해당하는 자로서 실질적인 경영권의 소유자를 말합니다.
- §43 ⑦ "지배주주등"이란 법인의 발행주식총수 또는 출자총액의 100분의 1 이상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소유한 주주등으로서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소유 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합계가 해당 법인의 주주등 중 가장 많은 경우의 해당 주주등(이하 "지배주주등"이라 한다)을 말한다.

#### 5 기존의 관계회사를 삭제하려는데 계속 오류가 나는 이유는요?

- 기존의 관계회사를 삭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할지점에 연락하시고 관계회사가 아님을 증빙하는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6 공사수주 실적현황에 2016년도 진행된 공사도 포함시키나요? 계약실적 및 기성실적은 어떻게 작성하나요?

- 공사수주 실적현황에는 2015년 결산일 현재까지 진행된 공사만 포함시키시면 됩니다.
- 계약실적은 2014년도에 계약하였으나 2014년도에 기성되지 않은 금액(이월계약)과 2015년도에 신규 계약한 금액을 합쳐서 적어주시면 됩니다. 기성실적은 2015년도에 기성한 금액을 적어주시면 되고 계약실적에서 기성실적을 뺀 금액이 이월액(잔여 공사금액)이 됩니다.
- 대한건설협회 공사실적신고 자료를 참조하여 작성하시면 됩니다.




## 7 다른 신용평가기관으로부터 신용평가를 받은 것이 참고가 되나요?

- 회사채 또는 기업어음 발행을 위해 받은 신용평가는 참고 사항이 되나, 기타 입찰용 등의 목적으로 받은 신용평가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 8 매출처별 매출액 명세에 발주처별 내용을 전부 기재하여야 하는지요?

- 발주처별로 간략한 공사명을 기재하시면 됩니다. 공사내역이 많을 경우 별도로 작성하신 내역(조합서식 아니어도 됨)을 제출하셔도 됩니다.



##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자료 제출방법

### 1 | 신용평가 신청시 인터넷으로 하지 않고 서면으로 신청할 수도 있나요?

- 홈페이지를 이용한 신청과 지점방문 또는 우편을 통한 제출 중 편리한 방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 2 | 신용평가 신청 완료 후 수정이 안되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 인터넷을 통해 신용평가를 신청하고 신청완료키를 누른 경우, 수정을 하고자할 때에는 신청완료화면 하단의 신청취소키를 누르시고 수정하신 후 다시 신청완료키를 누르시면 됩니다.  
단, 지점에서 접수한 경우에는 지점에 연락하셔서 접수 취소를 요청하신 후 앞의 작업을 수행하여 수정하시면 됩니다.

### 3 | 법인세신고자료는 어떻게 제출하나요?

- 2012년도 신용평가부터 조합원의 편의를 위해 신용평가 필수 제출서류에서 법인세신고자료를 제외시켰으므로 재무제표만 제출하시면 됩니다.

### 4 | 비외감법인의 경우 전자송신자료만 송신하면 별도로 조합에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없나요?

- 세무대리인을 통해 전자송신을 하셨더라도 신용평가신청서와 부속명세서 등은 [www.cgbest.co.kr](http://www.cgbest.co.kr) 의 인터넷창구에서 조합원이 직접등록하거나,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점으로 제출(방문 또는 우편)하셔야 합니다.



5

**재무자료를 전송했는데도 불구하고 조합에 접수되지 않았다고 하는데 이에 대한 확인은 어떻게 해야 하나요?**

- www.bigservice.co.kr의 **제출현황확인**에서 조합원의 법인번호 또는 사업자번호를 입력하고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세무대리인이 재무제표를 전송한 후 재무제표전송여부 확인까지 두시간 이상 소요될 수 있습니다.
- 간혹 제출기관을 잘못 선택해서서 전송되지 않는 경우도 발생하오니 **제출기관**을 반드시 **‘건설공제조합’**으로 선택해주시기 바랍니다.

6

**홈페이지를 통하여 신용평가 신청한 경우, 내용을 수정하려고 하는 경우 어떻게 하여야 하는지요 ?**

- 신청완료 처리를 한 경우 신청취소 (신청완료 클릭 옆에 위치)를 처리하여 이전 단계의 입력사항을 수정할 수 있으며, 수정처리를 완료한 후 다시 신청완료 처리를 하여야 합니다.

## < 참 고 > 2016년도 신용평가 업무안내

### 1. 신용평가 신청

조합 홈페이지 - 인터넷창구 -  
신용평가 메뉴 이용

### 2. 재무제표 제출

조합원 → 세무대리인

조합 담당자

※ 재무제표 전송은 세무대리인에게  
의뢰합니다.

### 3. 기타서류 제출

< 선택 제출 서류 >

- 우수시공, 포상, 표창 등 (2015년 이후)
-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권(유효기간 내)
-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원본  
(비외감 대표자 재산세 50만원 이상)

1, 2, 3 모두 완료하여야 신용평가 진행 가능

### 신용평가 신청 - 주의사항

#### 신용평가

CREDIT ASSESSMENT

신용평가신청안내

신용평가신청

조합원실태현황

재무상태부속명세

손익계산서부속명세

재무자료 및 제출서류

신청원료/신청취소

신청서류 출력

#### 신용평가

CREDIT ASSESSMENT

재무상태부속명세

1. 현금및현금성자산명세서

2. 유가증권 명세서

3. 주요채권 명세서

4. 단기대여금 명세서

5. 미수수익 명세서

6. 차입금 명세서

7. 기타주요 재무명세서

손익계산서부속명세

1. 매출처별 매출액 명세서

2. 이자수익 명세서

3. 이자비용 명세서

#### 재무상태부속 명세

1. 현금 및 현금등가물 명세서

작성  별도자료제출  해당사항없음

※ 등록자료가 없습니다. 확인후 반드시 등록처리 하시기 바랍니다.

현금

모든 계급

단기금융성종

No. 상대

현금

금액

데이터가 없음

**재무상태부속,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는 반드시 작성해야 합니다!**

- 작성 : 재무제표의 각 계정과목별 세부내역을 인터넷창구화면에서 작성합니다.
- 별도자료제출 : 결산보고서 등 세부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합니다.
- 해당사항없음 : 재무제표에 해당 계정과목이 없는 경우에만 선택합니다.

### 재무제표 제출 - 주의사항

- 재무제표는 세무대리인에 의한 온라인 전송을 원칙으로 합니다.
  - 다만, 재무제표 전송이 불가능한 개인사업자 및 일부 조합원의 경우에 한해 재무제표를 직접 제출합니다. (세무대리인 확인 필수)
  - 외부감사법인의 경우 감사보고서, 결산보고서 제출로 같음하며, 온라인전송결차는 생략하시기 바랍니다.
- 세무대리인의 자료제출 방법은 별도자료인 세무대리인 안내문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네오 아이플러스 회계프로그램 : 재무제표/부가세 전송 메뉴
  - 그 외 회계프로그램 : www.bigservice.co.kr 의 원클릭시스템 이용

## 인터넷을 통한 신용평가가 불가능한 경우

- 신용평가 신청 및 재무제표 제출 등 신용평가를 위한 절차는 인터넷을 통해 간편하게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만, 다음의 서류를 직접 제출하셔도 가능합니다.
- 조합 홈페이지(www.cgbest.co.kr)의 고객광장-업무자료-업무서식에서 신용평가 신청서(기타서식 포함)를 다운로드하여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 ① 필수 제출서류

서류명		비고
조합서식	1. 신용평가 신청서 2. 조합원 실태현황 3. 재무상태표 부속명세서 4. 손익계산서 부속명세서	서식1 서식2 서식4 서식5
재무제표	2015년도 결산 재무제표 : 재무상태표, 손익계산서, 원가명세서, 이익잉여금처분(또는 결손금처리)계산서	세무대리인 확인필
대표자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제출제외 : - 총자산 120억원 이상의 외감법인

※ 외부감사를 받은 경우, 재무제표 대신 외부감사인의 감사보고서와 원가명세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조합서식 3, 4(부속명세서)를 작성하기 곤란한 경우 동 서식의 내용이 모두 포함되어있는 별도자료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 별도자료 : 『결산보고서』책자 또는 해당 계정별 명세서(fax 포함)

### ② 기타 평가서류

서류명	비고
1. 우수시공, 포상, 표창 근거서류	2015년 이후 자료만 제출
2. 신기술, 특허, 실용신안권 등 근거서류	신기술, 특허 등 각 1개씩만 제출
3. 세목별 과세(납세)증명서	2015년도 대표자 개인 재산세(순재산세)가 50만원 이상인 경우 제출

※ 신용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법인세 신고자료 등을 추가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 ■ 전국 지점 연락처

영업점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 소
중앙지점	02-3449-8830	02-3449-8908	06050	서울시 강남구 언주로 711 건설회관 1층
종로지점	02-3449-2100	02-3449-2119	110-752	서울시 종로구 청계천로 35 관정빌딩 18층
동대문지점	02-3449-2120	02-3449-2129	130-811	서울시 동대문구 왕산로 10 교보재단빌딩 12층
여의도지점	02-3449-2130	02-3449-2139	150-923	서울시 영등포구 국회대로 70길 19 대하빌딩 4층
서초지점	02-3449-2140	02-3449-2159	137-881	서울시 서초구 서초대로 264 법조타워 오피스빌딩 7층
삼성지점	02-3449-2160	02-3449-2179	135-725	서울시 강남구 영동대로 85길 24 건동빌딩 8층
인천지점	032-439-7197	032-432-8784	405-711	인천광역시 남동구 미래로7 현대해상빌딩 3층
수원지점	031-253-1501	031-271-3066	440-822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팔달로 205 건설회관 2층
안양지점	031-388-0103	031-386-4101	431-814	경기도 안양시 동안구 부림로169번길 22 건설회관 2층
의정부지점	031-877-8191	031-871-8194	480-848	경기도 의정부시 신흥로 251 구성타워 13층
부천시지점	032-324-0384	032-326-0382	420-816	경기도 부천시 원미구 송내대로 88 한국산업은행빌딩 5층
성남지점	031-709-5979	031-709-5986	463-827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12 BYC빌딩 7층
안산지점	031-413-2185	031-413-2186	425-807	경기도 안산시 단원구 광덕서로 72 중앙법조빌딩 206호
일산지점	031-904-8671	031-904-8674	410-837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중앙로 1201 모아나빌딩 5층
춘천시지점	033-253-5061	033-254-9633	200-852	강원도 춘천시 동면 후만로 166 건설회관 1층
강릉지점	033-641-6616	033-643-7560	210-710	강원도 강릉시 울곡로 2806 한화생명빌딩 6층
원주지점	033-746-2217	033-746-0960	220-150	강원도 원주시 시청로 10 금정타워 4층
삼척지점	033-574-6516	033-574-6510	245-080	강원도 삼척시 청석로 59 파인힐빌딩 501호



영업점	전화번호	팩스번호	우편번호	주 소
청주지점	043-256-5156	043-256-5020	360-050	충북 청주시 상당구 상당로 34 외환은행빌딩 4층
충주지점	043-854-6720	043-854-6724	380-230	충북 충주시 국원대로 210 칠화빌딩 4층
대전지점	042-489-7611	042-483-7617	302-713	대전광역시 서구 문정로6 국민연금관리공단 대전지사 빌딩 3층
예산지점	041-333-4151	041-332-7145	340-802	충남 예산군 예산읍 벚꽃로155번길 28 지엠빌딩 3층
천안지점	041-563-0820	041-563-0823	330-993	충남 천안시 동남구 만남로 82 소암빌딩 7층
전주지점	063-276-2031	063-276-2037	560-833	전북 전주시 완산구 백제대로 280 건설회관 3층
광주지점	062-363-0018	062-365-2696	502-730	광주광역시 서구 독립로 174
순천시점	061-722-6057	061-722-6059	540-724	전남 순천시 이수로 296 청우빌딩 6층
목포지점	061-283-3865	061-283-3868	530-826	전남 목포시 백년대로 306 한국산업은행 목포지점빌딩 2층
대구지점	053-744-4790	053-756-5073	706-726	대구광역시 수성구 국채보상로 860 3층
포항지점	054-281-9092	054-275-0718	790-824	경북 포항시 남구 상공로 10 매일신문사빌딩 8층
구미지점	054-456-5901	054-456-5905	730-914	경북 구미시 송원동로 7 용은빌딩 6층
부산지점	051-463-8147	051-464-0475	601-83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 709 서면금융프라자빌딩 6층
울산지점	052-245-1504	052-245-1574	681-300	울산광역시 중구 백양로 179 건설회관 2층
창원지점	055-294-3261	055-294-4261	630-807	경남 창원시 마산회원구 3.15대로 650
진주지점	055-762-1217	055-762-1229	660-724	경남 진주시 진주대로 888 아이비타워 601호
제주지점	064-744-1961	064-746-8060	690-717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신대로 64